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
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훈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용·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(노무제공자)에 해당하는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상 ‘위험물 운반자’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공요청 대상 자료 추가 (안 제54조의2제1항)

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‘위험물 운반자’에 관한 자료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4 중 “위험물운송자”를 “위험물운반자 및 위험
물운송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4조의2(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)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“근로소득자료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	제54조의2(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9의3. (생략)	1. ~ 19의3. (현행과 같음)
19의4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<u>위험물운송자</u> 에 관한 자료	19의4. ----- -- <u>위험물운반자</u> 및 <u>위험물운송자</u> ---
19의5. ~ 20. (생략)	19의5. ~ 20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
연락처	(044) 202 - 7373